제 2013-5470057-05-6-00001 호

소 매 인 지 정 서

- ✔ 제7조의3제1항에 따른 경우
 - □ 제7조의3제2항에 따른 경우

- 성 명(법인명): 김상호
- 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 1973년 03월 27일
- 상 호 : 신원주유소
- 영업소 위치 : 경상남도 거창군 신원면 신차로 3099

「담배사업법」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제1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소매인으로 지정합니다.

2013년 01월 07일

경 상 남 도 거 창 군



영 업 소 변 경				
지정연월일	위 치	확 인 (인)		

<영업상 유의사항>

- 1. 담배사업법령을 철저히 지켜야 합니다. 2. 불량담배는 어느 소매소에 샀던지 소비자가 요구하면 즉시 교환하여 주어야 합니다. 3. 진열장 내외를 항상 깨끗이 정돈하고 소비자에게 친절하고 예의를 다하여야 합니다. 4. 담배는 종류를 갖추어 보기 좋게 진열하여야 합니다.

담배소매인 준수사항

- 1. 담배사업법 시행규칙 제14조 제4항의 소매인이 휴업을 하는 경우에 그 휴업기간은 30일 이내로 하여야 하며, 연간 총휴업 일수는 60일 이내로 하여야 한다.
- 2. 담배소매인 승계금지(법 제7조의 신규지정에 관한 신청공고)
- 3. 소매인의 영업정지처분의 기준(제11조 제4항관련)

OL HI II ŠL	근 거 법 령	영업정지기준	
위 반 사 항		1차위반	2차위반
1. 법 제12조제3항을 위반하여 담배를 판매한 때	법 제17조제2항 제1호	3개월	6개월
2. 법 제18조제5항을 위반하여 공고된 판매가격으로 담배를 판매하지 아니한 때	법 제17조제2항 제1호의2	3개월	6개월
3. 법 제20조를 위반하여 담배의 포장 및 내용을 바꾸어 판매한 때	법 제17조제2항 제2호	2개월	4개월
4. 법 제25조제3항에 따른 광고물의 제거 등 시정에 필요한 명령이나 조치를 이행하 지 아니한 때	법 제17조제2항 제3호	6개월	9개월
5. 정당한 사유없이 30일 이상 담배를 판매하지 아니한 때	법 제17조제2항 제4호	1개월	2개월
6. 정당한 사유없이 60일 이상 담배를 매입하지 아니한 때	법 제17조제2항 제5호	1개월	2개월
7. 청소년에게 담배를 판매한 때	법 제17조제2항 제6호	2개월	3개월
8. 법 또는 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한 때가. 제7조의3제2항 후단을 위반하여 준수사항을 지키지 아니한 때나. 제8조를 위반하여 승인 없이 소매인 영업소의 위치를 변경한 때	법 제17조제2항 제7호	15 일	1 개 월

※ 위와 같이 담배사업법령 준수사항(청소년 담배판매는 영업정지 2월임)을 철 저히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자동판매기는 건물 외부설치 불가함)

『지정서는 액자에 끼워 게첨하세요(일반인이 잘 볼 수 있도록 하세요)』